

인천광역시의회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10. 29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10. 8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10. 11
- 라. 상정일자 : 2010. 10. 27 (제188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)
 - 제안설명 : 정태옥 기획관리실장
 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 - 질의 및 토론
 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과 상충되는 보조금 지원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“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.” 로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.(안 제4조)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○ 동 조례안은

- 감사원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안전부의 우리시 종합감사시 의정회 조례의 보조금 지원조항 운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안 제4조와 같이 보조금지원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개정 내용은

- 현행 조례 제4조는 “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”로 규정하고 있고
-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“의정회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하여 사업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최근 3년간 의정회 보조금 지원 예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8년			2009년			2010년		
	계	사업비	운영비 (인건비등)	계	사업비	운영비 (인건비등)	계	사업비	운영비 (인건비등)
지원액	50,000	28,700 (57%)	21,300 (43%)	47,500	29,900 (63%)	17,600 (37%)	50,000	36,400 (73%)	13,600 (27%)

○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

- 광주, 경기도 등 7개 시·도는 조례에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보조금 지원조항 없음 포함) 되어 있으며, 인천, 서울 등 9개 시도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.

- 현재, 경북은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는 사업비만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음.
- 따라서 타 시·도의 개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의정회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을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<별 첨 1> 감사원 통보 문서

감 사 원 통 보

제 목 의정회 보조금 지급조례 제정 및 운용의 부적정
중앙행정기관 행정자치부
관 계 기 관 행정자치부 본부
내 용 행정자치부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5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
보조금 지급 등 지방재정 운영을 지도·감독하고 있다.

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」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(2004. 4. 23. 선고 2002 추16)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예측하기도 불가능하므로 의정회가 영위하려는 사업을 “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”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유로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.

그런데도 서울특별시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관내 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, 계속 운용하고 있다.

그 결과 위 지방자치단체들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4. 6. 1. 부터 2006. 5. 31. 사이에 위법한 조례를 근거로 총18억여 원의 의정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.

<조치할 사항> 행정자치부장관은 서울특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「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중 「지방재정법」에 위배되는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.

<별 첨 2> 시·도별 의정회 지원조례상 지원 현황

구분	보조금지원 규정	조례상 지원		조례개정 필요여부
		사업비	운영비 사업비	
서울	②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	●	필요함. (11월 상정)
부산	제5조(보조금 지원)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		●	필요함. (의회-개정권고)
인천	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인천광역시장은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	●	필요함. (10월 상정)
대구	②대구광역시장은 의정회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	●	필요함. (감사지적검토)
광주	제2조(보조금의 지원) 광주광역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.	●		×
대전	제5조(보조금지원) ①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		●	필요함. (의회-개정권고)
울산	“보조금 지원 조항 없음”	×	×	×
경기	②경기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	●		×
강원	제2조(보조금의 지원) 강원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●		×
충북	제4조(보조금의 지원) ① 충청북도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	●	필요함. (의회-개정권고)
충남	②충청남도지사지사는 의정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	●		×

구분	보조금지원 규정	조례상 지원		조례개정 필요여부
		사업비	운영비 사업비	
전북	제2조(보조금의 지원) 전라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		●	필요함. (의회-개정권고)
전남	②전라남도지사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전라남도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	●		×
경북	제4조(보조금의 교부)경상북도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'10.7.8>	●		×
경남	제4조(보조금의 지원) 경상남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	●	필요함. (의회-개정권고)
제주	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제주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	●	필요함. (의회-개정권고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이재병, 차준택, 전원기, 홍성욱 위원
 - 대법원 판례 및 시민사회의 요구도 있으니 본 조례의 폐지를 정식으로 요구함.
 - 보조받는 금액은 사업비 용도로만 하고 운영비는 회비로 하면 될 것임
 - 민선5기 ‘소통’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클 것이며 의정회 회원의 의견도 또 다른 의미의 소통구조라고 볼 수 있음. 지방재정법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는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 음.

나. 반 대 : 홍성욱, 신동수, 이재병, 전원기, 차준택, 허회숙 위원

6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 (재석위원 6명 : 찬성 5명, 반대 1명)

7. 수정안 요지

-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“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 의정회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”에서

“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” 로 수정한다.

8. 소수의견 요지

- 본 조례의 폐지를 요구 (이재병 위원)

9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

인천광역시의회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의회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경상
적경비를 제외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
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단법인인천광역시의정회(이하 “의정회”라 한다)를 지원하여,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 및 설립운영)</p> <p>① 의정회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(인천시의원을 포함한다)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의정회의 설립, 육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 <p>제3조(사업)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<u>각호</u>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4.(생략)</p> <p>5. <u>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	<p><u>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<u>인천광역시의정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구성 및 설립운영)</p> <p>① <u>인천광역시의정회(이하 “의정회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제3조(사업)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1. ~ 4.(현행과 같음) 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인천 <u>광역시장은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인천 <u>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의정회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인천 <u>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 (사업계획 등의 승인)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<u>인천광역시장</u>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의정회는 <u>인천광역시장</u>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 (사업계획 등의 승인) ① ----- ----- ----- <u>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시장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6조 (결산보고 등) ① 의정회는 <u>인천광역시장</u>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<u>당해</u>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<u>인천광역시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6조 (결산보고 등) ① ----- <u>시장</u>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<u>시장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준용) 의정회의 설립,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<u>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</u>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8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천광역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</u> -----에 따른다.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의정회(이하 “의정회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의정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정회”를 “인천광역시의정회(이하 “의정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”을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인천광역시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「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단법인 <u>인천광역시의정회(이하 “의정회”라 한다)</u>를 지원하여,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 및 설립운영) ① 의정회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(인천시의원을 포함한다)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의정회의 설립, 육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 <p>제3조(사업)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<u>각호</u>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4.(생략)</p> <p>5. <u>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	<p><u>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인천광역시의정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구성 및 설립운영) ① 인천광역시의정회(이하 “의정회”라 한다)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제3조(사업)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</p> <p>1. ~ 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</p>

